

제 877 호
1981.12.15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편 집 : 공 보 관 이 총 우
전화 725-7834
인 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2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규 칙	
제 1941 호 :	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중개정규칙 3
◎ 고 시	
제 434 호 :	재개발사업환지확정처분 10
제 435 호 :	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 10
제 436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11
◎ 공 고	
제 368 호 :	도시계획사업 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변경시행 공람공고 12
제 369 호 :	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13
제 370 호 :	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13

<이번호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제 371 호 :	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	14
제 372 호 :	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	14
제 373 호 :	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	15
제 374 호 :	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	15
제 375 호 :	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	16
제 377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완료공고	10

© 사 령

규 칙

서울특별시 공무원제안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16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941 호

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중 "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"를 "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"로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"을 "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위한"으로 한다.

제 2 조 제 2 항 중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"직접적인 경비절감"이라 함은 현행제도 또는 방법에 의하여 특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서 창안에 의한 제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창안실시에 투입된 재경비를 감한 금액을 말한다.

제 4 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제 6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.

제 12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전문위원은 제 19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한 각 분야별로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경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 13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간사는 시정개발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시정개발담당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

제 16 조에 제 2 항내지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제안서
- 2. 제안내용설명서
- 3. 경비절감산출내역서
- 4. 직무제안추천서 (직무제안에 한한다)

③제 2 항 제 1 호의 제안서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, 제 4 호의 직무제안 추천서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다.

④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실적서

도안 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각 3부씩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.

⑤제안은 연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.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있다.

제 19 조 내지 제 33 조를 제 20 조내지 제 34 조로 하고 제 19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19 조 (심사) ①시장은 제안에 대하여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희한 경우에는 그 이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.

다만, 제안의 내용이 상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불채택으로 처리 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년 1 회로 하며 심사 결정할 때에는 제안 심사 결정서를 작성한다.

③시장은 접수된 제안은 그 성질과 분야에 따라 행정제도분야과학기술분야등으로 세분하여 심사처리 할수 있다.

제 23 조 제 1 항중 "제 21 조"를 "제 22 조"로 하고 제 2 항을 제 3 항으로 하며 "상안자에 대하여는"을

"상안자 및 노력상 수상자에 대하여는"으로 하고 동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상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중 노력도가 현저한 제안에 대하여는 노력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 2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5 조 (부상) 시장은 채택된 상안 및 노력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금상은 1 상안당 250 만 원이상 500 만원 이하
2. 은상은 1 상안당 150 만 원이상 250 만원 미만
3. 동상은 1 상안당 50 만원 이상 150 만원 미만
4. 장려상은 1 상안당 30 만 원이상 50 만원 미만
5. 노력상은 1 제안당 5 만 원이상 30 만원 미만

제 27 조중 "제 25 조"를 "제 26 조"로 한다.

제 28 조중 "제 26 조"를 "제 27 조"로 한다.

제 29 조중 "27 조"를 "28 조"로 한다.

제 30 조중 "제 28 조"를 "제 29 조"로 한다.

제 31 조 제 1 항중 "관하기관에 시달하여"를 "소속기관으로 하여금"으로 제 2 항 "관계기관의"를 "당해기관의"로

한다.

제 32 조 (3항중 "제 20 조제 2항" 을 제 21 조 제 2항"으로 한다.

제 35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35 조 (평가서의 작성) ①창안 실시기관의 장이 창안 실시성 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실평가서에 의하여 회계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회계적인 방법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한다.

②창안실시기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.

제 36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36 조 (창안관리 기록부의 비치) 창안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 3 호 서식의 "창안관리기록부"를 비치하고 창안의 실시사항 및 평가결과를 기록보관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.

제 34 조를 제 37 조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 및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참여금은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경비 절감액을 김토 확인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③시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

없이 이를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38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38 조 (경비산출기간) ①제 31 조의 규정에 의거 참여금 지급에 관하여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 8 조의 3 에 규정된 1년간의 절약된 경비"라 함은 창안 실시 이후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절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최초의 일로부터 1년간 산출한 경비를 말한다.

②창안실시후 5년 이내에 경비 절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는 경비절약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 39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37 조 (기타보상)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여건 변동으로 서울특별시가 이를 시행한 경우에는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.

제 35 조를 제 40 조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서울특별시제인업부처리 규정 (훈령 517호 79.12.27)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③(동전)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가중에 있는 제안은 이 규칙에 의한 제안으로 본다.

<별지제 1호서식>

자유 제안서
 지정

수신 : 서울특별시

제 안 내 용	제 문 의 류	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제도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과학기술분야	심 사 번 호
	제 목		
	개 요		
	현 행 상 의 문 제		
	현 행 과 내 비	현	개 선
효 과	예 산 감 액	국고또는조세 수입증대액	행정개신 효 과

..... 선

제 안 자	성 명	한글	주민등록 번호	접수번호
	소 속	한자	번 호	심사번호
	주 소		직 급	연락전화 번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규칙 제 16 조에 의거 자유제안서를 제출합니다.

지정

..... 년 월 일

①

- 첨부 1. 제안내용설명서
 2. 경비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액 산출내역서
 3. 참고자료
 4. 직무제안추천서 (직무제안에 한함)

<제 2 호서식>

직 무 제 안 추 천 서

서울특별시청 귀하

제 안 자

소 속

직 급

성 명

연 령

제안자의 담당직무

제안자의 경력개요

직무제안의 내용
개 요

창 의 성

개 선 효 과

의 건

위와같이 직무제안을 추천합니다.

추천기관명

직 위

성 명

직 인

실 인

<별지제 3 호서식>

창안관리기록부

기관명

① 채택년도	년 (제 회)						
② 창안번호	제	호	③ 작성기관				
④ 창안제목			⑤ 세안의종류			⑥ 제안의분류	
⑦ 창안개요							
창안자	⑧ 성명	한 글	⑨ 주민등록		⑩ 직급		
		한 자	번호				
	⑪ 창안당시			⑫ 현소속			
창안채택 및 시상관계	⑬ 채택 근거		⑭	⑮ 보상관계		⑯ 인사상 특전부여	
	심의의결일	채택결정일	창안등급	종류	일자	구분	일자
							부상금 천원
창안 실시 관계	⑰ 창안실시요구(지시) 근거		분류기호및문서번호	일자	⑱ 실시기간		
	⑳ 완전실시 ()	㉑ 일부실시 ()	㉒ 신기예성 ()	㉓ 실시불가 ()		㉔ 실시중단 ()	
	수정 보안 (실험, 연구등)	㉕ 내 용		㉖ 실험, 연구기관		㉗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)	

17-8 시 877 호 시

보

1981.12.15

2168

		㉔ 실시범위		㉕ 소요예산	
		㉖ 타기관협조사항		㉗ 관계법령개정사항	
행정목적					
	㉘ 추정기간	㉙ 예산절감액	㉚ 조세수입증대액	㉛ 행정개선효과	㉜ 유정기간
안무실시효과					㉝ 기록화진
상여금지급	㉞ 상여금지급	㉟ 예산절감액		㊱ 지	㊲ 상여금지급
		㊳ 조세수입증대액			㊴ 결정액
		㊵ 행정개선효과			
㊶ 지급기관		㊷ 상여금지급액		㊸ 지급년월일	
비고					

제 277 호

시

보

1991.12.15

17-9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34 호

재개발사업환지확정처분

- 1.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지구
홍은 5, 마천 1, 2, 3, 용암 2, 신당 1,
미아 5, 7 개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완

료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의
규정에 의하여 분양처분하고 이를
고시한다.

- 2. 분양처분된 확정 내용에 대하여
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
개별 통지하며 송달되지 않은 토
지에 대하여는 본 고시문으로 갈
음하고 등분양처분 관계도서는 서
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및
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공람한다.

아 래

지 구 명	위 치	면 적
홍 은 5 지 구	서대문구홍은동 152-1번지일대	13,911.4 평
마 천 1	강동 마천동 15-246	10,685 평
마 천 2	" " 205	17,503.3 평
마 천 3	" " 253-144	3,562.3 평
용 암 2	서대문용암동 243-177	24,264.5 평
신 당 1	중구신당동 37-119	7,124 평
미 아 5	성북미아동 670-13	1,802 평

1981. 12. 14

서 울 특 별 시 장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35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



- 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50 호 (81.7.4)
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결정된 지
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

건설부 고시제 463 호 (79.12.10)
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
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
고시한다.

-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
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

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		1981.12.15 서울특별시		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지적 승인조서				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방배지역근교	강남구방배동 772 일대	11,570 (3,500평)	
나. 지적고시도면: 별첨(생략)				
<p>○서울특별시고시제 436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</p> <p>1. 건설부고시제 318 호(73.8.1)로 시설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137 호(73.8.16)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(79.12.10)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81.12.16 서울특별시</p> <p>가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성동구</p>		<p>모진동 93-1 외 2 필지</p> <p>나. 사업의종류: 도시계획사업(학교: 건국대학교)</p> <p>명칭: 건국대학교 시설확충</p> <p>다. 사업시행규모</p> <p>(1)시행면적: 16,841.6 평</p> <p>(2)건축계획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건축면적 - 3,808.25㎡(건물2동) ○연면적 - 11,486.37 평(3,475평) ○구조 - 철근콘크리트라멘조 ○동별층수 및 편적 교양학부(신축) - 지하1층, 지상5층, 옥탑 기숙사(신축) - 지상4층, 옥탑2층 ○용도 - 교사 및 기숙사 <p>라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: 서울특별시성동구모진동 93-1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이사장 유승윤</p>		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(1)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		(2) 준공예정일 : 1983.12.30 바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			
사. 사용할토지					
지	번	지	목	면	적
성동구모진동 93-1		학	교 용 지	38,109 평	중 5,962.6 평
성동구모진동 95		"	"	17,448 평	중 5,252.5 평
성동구모진동 145		"	"	60,291 평	중 5,626.5 평
계 3필				16,841.6 평	
아. 토지소유자 :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(수용할 토지없음)		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공 고</div>				공 략 개 요	
○서울특별시공고제 368 호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변경시행공람공고				가. 사업시행지 : 강남구포이동 70-3 일대 및 열곡동 335일대 나. 사업규모 : 59,912 (18,123.38 평) 다. 변경내용 : ○마을회관위치변경 및 면적변경 당초 393 평 변경 340 평 ○어권이늘어터조정	
1. 서울특별시고시제 103 호 (91.4.6) 시행변경허가된 강남구 포이동, 열곡동 일대 취락구조 개선사업지인 동산마을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을 변경시행코저 도시계획법제 25 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.				라. 사업기간 : 당초 80.11.24-81.12.31. 변경 80.11.24-82. 6.30. 아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강남구포이동 75번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추진위원장 이 인 규	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새마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				바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. 기타상세한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새마을과에 문의바람.	
1981.12.16 서울특별시장					

<p>○서울특별시공고제 369호</p> <p>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율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 9 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>1981.12.15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1. 공인명 : (1)투자관리담당관실 분임 물품관리관인 (2)투자관리담당관실, 분임 물품출납원인</p> <p>2. 사용개시일 : 81.12.15</p> <p>3. 공인의인명 : 아래</p>		<p>○서울특별시공고제 370호</p> <p>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율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 9 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>1981.12.15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1. 공인명 : 서무 1도과 분임물품출납원인</p> <p>2. 사용개시일 : 81.12.15</p> <p>3. 공인의인명 : 아래</p>	
		공 인 의 인 명	
인 영			인 영
공 인 명	투자관리담당관 실분임물품출납 원인	투자관리담당관 실분임물품관리 관인	공 인 명
		서무지도과분임물품출납원인	

○서울특별시 공고제 371호

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하고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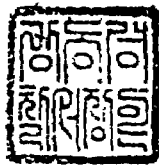
1981.12.15

서울특별시장

- 1. 공인명 : 강동경찰서장인
- 2. 사용개시일 : 81.12.22
- 3. 공인의인영 : 아래

공 인 의 인 영

인



영

공 인 명

강동경찰서장인

○서울특별시 공고제 372호

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.

1981.12.15

서울특별시장

- 1. 공인명 : 서울특별시 지하철도과
분임물품출납인
- 2. 사용개시일 : 81.12.15
- 3. 공인의인영 : 아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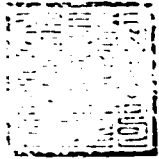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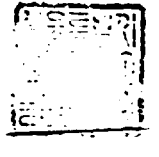


인



영

공 인 명

서울특별시지하철도과분임
물품출납원인

<p>○서울특별시공고제 373호</p> <p>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>1981.12.15 서울특별시장</p> <p>1. 공인명 : 1) 서울특별시 민방공경보통계소장인 2) 서울특별시 민방공경보통계소분입물산출원인 3) 서울특별시 민방공경보통계소분입지출원인</p> <p>2. 사용개시일 : 81.12.15 3. 공인의인영 : 아예</p>		<p>인 영</p> 
<p>공인명</p> <p>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계소분입지출원인</p>		
<p>○서울특별시공고제 374호</p> <p>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>1981.12.15 서울특별시장</p> <p>1. 공인명 :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물산출원인</p> <p>2. 사용개시일 : 81.12.15 3. 공인의인영 : 아예</p>		<p>인 영</p> 
<p>공인명</p> <p>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물산출원인</p>		
<p>인 영</p>  	<p>공인명</p> <p>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계소장인</p> <p>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계소분입물산출원인</p>	

○서울특별시공고제 375 호

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개각 사용승인하고 관인규정 제 9 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1981.12.15

서울특별시 장

- 1. 공인명 : 도시계획과 분임물품출납원인
- 2. 사용계시일 : 81.12.15
- 3. 공인의 인명 : 아래

한 지역에 대하여 공사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시민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12.17

서울특별시 장

- 1. 사업시행지 : 강남구 개포동 산 84 번지 일대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일본인 학교
- 3. 도시계획사업시행자 : 서울일본인회
- 4. 사업기간 : 1981.4.8-81.12.
- 5. 사업의 규모 : 16,102 (4,870.8 평)
- 6. 인가번호 및 일시 : 서울특별시고시 제 115 호 (81.4.0)
- 7. 준공도면 : 별첨 (생략)

인
명



공 인 명 도시계획과분임물품출납원인

사 경

○서울특별시공고제 377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
시행허가 완료공고
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15 호 (81.4.8) 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○1981년 12월 12일자 명제 517 호

동대문구시민극장 신 경 덕
지 방 서 기 판

지방공무원법 제 48 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 1, 2, 3 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.

서울특별시 장

<p>◎ 1981년 12월 14일자 령제 519 호</p> <p>부산시소방본부장 김 대 양 소 방 정 감</p> <p>지방소방정감에 임함. 소방본부장에 포함.</p> <p>소 방 본 부 장 유 봉 식 지 방 소 방 정 감</p> <p>소방정감에 임함. 소방학교 교장에 포함.</p> <p>대 통 령</p>	<p>령제 523 호</p> <p>성동구청무과장 김 기 종 지방행정사무관</p> <p>원에 의하여 그 직을 겸함.</p> <p>◎ 1981년 12월 16일자 령제 524 호</p> <p>자동차관리사업소 윤 성 순 지방행정서기</p> <p>용산구청무과과장 근무를 명함. (81.12.16 - 82.12.15)</p> <p>자동차관리사업소 이 윤 수 지방행정서기</p>
<p>◎ 1981년 12월 11일자 령제 520 호</p> <p>성 동 구 사 근 동 김 상 윤 지 방 행 정 서 기</p> <p>지방행정주사보에 추서함.</p>	<p>강동구청무과 과장근무를 겸함. (81.12.16 - 82.12.15)</p> <p>자동차관리사업소 전 상 영 지방행정서기</p> <p>동대문구새마을과 과장근무를 겸함. (81.12.16 - 82.12.15)</p>
<p>◎ 1981년 12월 13일자 령제 521 호</p> <p>내 무 국 방 중 권 지 방 행 정 주 사</p> <p>복직을 겸함.</p> <p>동작구 근무를 명함.</p>	<p>◎ 1981년 12월 21일자 령제 525 호</p> <p>중구청무로4.5가동 김 종 영 지방행정서기</p> <p>내무국총무과 고 창 남 내무국총무과 지방행정서기 강 남 구 서 울 특 별 시 장</p>